

《자료》

- 환경보전법시행령중 개정령
-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중 개정령
- 주택공급에관한규칙중 개정령
- 국민주택기금운용 및 관리규정개정

환경보전법시행령종개정령(1983. 4. 13개정)

대통령령제 11,101호

환경보전법시행령종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1항 제1호에 바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바. 탄화수소

제3조 제1항 제2호에 바목 및 사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바. 부유물질

사. 노말헥산추출물질

제3조 제1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소 음

제4조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관광단지의 개발

제4조의2 제1항중 “행정기관의 장”을 “기관의 장”으로 하고, 동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영향평가서를 작성하여야 할 사업의 구체적인 범위와 협의 요청시기는 별표 1과 같으며, 그 기재사항·작성방법 및 작성요령은 환경청장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4조의3 제1항중 “중앙환경자문위원회”를 “중앙환경보전자문위원회”로, “행정기관의 장”을 “기관의 장”으로 하며, 동조제2항 및 제3항중 “행정기관”을 각각 “기관”으로 한다.

제5조 제3항중 “고시하여야 한다”를 “고시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한 때에도 또한 같다”로 한다.

제6조 제2항중 “자연환경보전지구”를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하여 이를 제3항으로 하고, 동조제1항을 제2항으로 하며, 동조에 제1항·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법 제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연환경의 보전을 위한 조사는 전국조사와 지역조사로 구분하여 전국조사는 매 10년마다 1회, 지역조사는 매년 일정지역을 대상으로 기본계획을 수립·실시하여야 한다.

④법 제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자연생태계 보전구역의 지정대상은 다음과 같다.

1. 자연상태가 원시성을 가지거나 자연자원이 풍부하여 학술상 연구가치가 큰 지역

2. 지형 또는 지질의 형태가 특수하여 특이한 자연현상이 일어나는 지역

3. 희귀한 동물이나 식물 또는 고유생물의 서식지역으로서 특히 보존의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지역

⑤법 제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청장이 자연생태계 보전구역을 지정한 때에는 지체없이 지정연월일·구역 및 면적 기타 필요한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한 때에도 또한 같다.

제6조의3 제3항중 “건설부장관·” 다음에 “노동부장관·”을 삽입하고, “·국무총리행정조정실장 및 경제과학심의회의 위원 중 위원장이 지명하는자 1인이 된다”를 “및 국무총리행정조정 실장이 된다”로 한다.

제6조의7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실무위원장은 환경청장이 되고, 실무부위원장은 환경청 소속 국장중 환경청장이 지정하는자가 되며, 실무위원은 경제기획원·내무부·문화교부·농수산부·상공부·동력자원부·건설부·노동부·교통부·체신부·문화공보부·과학기술처·산림청·수산청·해운항만청·서울특별시소속의 국장 또는 3급이상의 일반직 공무원(이에 상당하는 특정직 또는 별정직 국가공무원을 포함한다)중 해당 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자 각 1인 및 환경보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위원회의 위원장이 위촉하는 자가 된다.

제6조의11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과”를 “의원과”로 한다.

제7조 제4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당해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10조 제1항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자연생태부문위원회

제10조 제2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환경영향평가부문위원회는 부문위원장 1인과 부문위원 30인 이내로 구성한다.

제13조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과”를 “의원과”로 한다.

제14조 제2항중 “서울특별시, 부산시 및 도(이하 “시·도”라 한다)의 부시장(서울특별시에 있어서는 제1부시장) 또는 부지사”를 “서울특별시·직할시 및 도(이하 “시·도”라 한다)의 부시장 또는 부지사”로 하고, “부산시장”을 “직할시장”으로 한다. 제16조 제3호중 “오염물질배출량”을 “오염물질등의 배출량”으로 하고, 동조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방지시설의 설치내역서(다만, 법 제15조 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방지시설의 설치의무가 면제되는 자는 이를 인정할 수 있는 서류)

제16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제출서류의 작성요령 및 종류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사회부령으로 정한다.

제1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6조의2(환경기술감리단의 기술검토) ①환경청장은 법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배출시설의 설치허가를 함에 있어서는 미리 법 제15조의3의 규정에 의한 환경기술감리단의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설치에 관한 기술검토를 받아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술검토를 받아야 할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종류와 규모는 환경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7조의2 내지 제17조의10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7조의2(환경기술감리단의 구성) ①법 제15조의3의 규정에 의한 환경기술감리단(이하 “감리단”이라 한다)은 산업기술분야별로 각각 7인 이내의 기술위원으로 구성한다.

②기술위원은 관계전문가 및 공무원중에서 환경청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제17조의 3 (감리단의 업무) 감리단의 업무범위는 다음과 같다.

1. 법 제15조의 3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배출시설 및 방지 시설의 설치·변경에 따르는 기술검토
2. 법 제15조의 3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배출시설 및 방지 시설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기술지도
3. 환경오염방지기술의 연구·개발
4. 기타 환경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7조의 4 (수당등) 기술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7조의 5 (세부사항) 감리단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환경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17조의 6 (개선계획서 및 이전계획서의 제출)

①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개선명령 또는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이전명령을 받은 사업자는 그 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15일이내에 다음 사항을 명시한 개선계획서 또는 이전계획서를 환경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환경청장은 배출시설의 종류 및 규모에 따라 부득이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업자의 신청에 의하여 그 제출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1. 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개선기간 또는 법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이전기간(이하 이조에서 “개선 또는 이전기간”이라 한다)완료전에 개선 또는 이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개선 또는 이전하고자 하는 기간.

2. 개선 또는 이전기간중에 배출시설의 가동을 중단 또는 제한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과 제한의 내용

3. 공법등의 개선으로 오염물질등의 배출을 감소시키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

②사업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개선계획서 또는 이전계획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하였더라도 제1항 각호의 해당사항을 명시하지 아니한 때에는 개선 또는 이전기간중에 개선명령 또는 이전명령에 명시된 오염상태에서 오염물질을 배출하면서 배출시설을 계속 가동한 것으로 추정한다.

제17조의 7 (배출부과금의 부과대상 오염물질등) 법 제19조의 2제3항의 규정에 의한 배출부과금(이하 “부과금”이라 한다)의 부과대상이 되는 오염물질등은 다음과 같다.

1. 대기분야: 아황산가스, 불소화합물, 분진, 악취
2. 수질분야: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 또는 화학적 산소요구량, 부유물질, 특정유해물질

제17조의 8 (부과금 산정방법 및 기준) ①부과금은 오염물질별로 정하되 그 금액의 산정은 다음의 방법에 의한다.

1. 아황산가스, 불소화합물, 분진,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 또는 화학적 산소요구량, 부유물질 및 특정유해물질
오염물질 1킬로그램당 부과금액 × 배출허용기준초과 오염물질배출량 × 배출허용기준초과율별부과계수 × 지역별 부과계수 × 연도별 부과금 산정지수

2. 악취
배출물질 1천세제곱미터당 부과금액 × 배출물질량 × 악취농도별 부과계수 × 지역별 부과계수 × 연도별 부과금 산정지수

②제1항의 오염물질 1킬로그램당 부과금액, 배출허용기준초과율별부과계수 및 지역별부과계수등은 별표2와 같다.

제17조의 9 (배출허용기준 초과오염물질 배출량 및 배출물질량 등) ①제17조의 8제1항제1호의 배출허용기준초과오염물질 배출량은 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개선명령 또는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이전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개선 또는 이전이 완료될 때까지의 기간중에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조업함으로써 배출된 오염물질의 양을 말하며, 그 산정방법은 다음과 같다.

배출허용기준초과 일일오염물질 배출량 × 배출기간(배출허용

기준을 초과하여 오염물질을 배출하면서 조업하는 기간을 말한다. 이하 같다)

②제1항의 배출허용기준초과 일일오염물질 배출량은 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개선명령 또는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이전명령의 원인이 된 오염물질의 배출허용기준초과 농도와 그 배출농도를 측정한 때의 폐수 또는 배출가스의 유량(이하 “측정유량”이라 한다)에 의하여 계산한 그날의 폐수 또는 배출가스의 총량(이하 “일일유량”이라 한다)에 의하여 산정한 양을 킬로그램단위로 표시한 것을 말하며, 배출허용기준초과 일일오염물질배출량 및 일일유량의 산정방법은 별표3에 의하고, 측정유량의 산정은 환경오염공정시험법에 의한다.

③제17조의 8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배출물질량은 배출기간중에 배출된 가스의 양을 1천세제곱미터단위로 표시한 것을 말하며, 그 산정방법은 다음과 같다.

일일유량 × 배출기간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배출기간은 일수로 표시하며, 그 기간의 계산은 민법의 규정에 의한다.

제17조의 10 (연도별 부과금 산정지수) 제17조의 8제1항의 연도별 부과금 산정지수는 시행연도의 지수를 $\frac{100}{100}$ 으로 하고, 다음연도부터는 매년 전년도 부과금 산정지수에 $\frac{120}{100}$ 을 곱한 것으로 한다.

제17조의 11 (부과금 납부통지) 환경청장은 제17조의 6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개선계획서 또는 이전계획서상에 명시된 배출기간 또는 제17조의 6제2항의 규정에 의한 배출기간에 의하여 제17조의 8의 규정에 따라 산정한 부과금액·납부일자·납부장소 기타 필요한 사항을 당해 사업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17조의 12 (개선명령 또는 이전명령 이행보고 및 확인) ①사업자는 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개선명령 또는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이전명령을 이행한 때에는 보건사회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없이 이를 환경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환경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받은 때에는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개선명령 또는 이전명령의 이행 상태를 확인하게 하여야 한다.

제17조의 13 (과부족 있는 납입금의 환급 및 추징) ①환경청장은 제17조의 1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한 결과 이미 납부된 부과금에 과부족이 있을 때에는 이를 환급 또는 추징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환급 또는 추징은 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개선명령 또는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이전명령을 이행한 날로부터 15일이내에 하여야 하며, 환급 또는 추징금액의 통지등에 관하여는 제17조의 11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8조제1항제1호중 “환경관리기사1급”을 “환경기사1급”으로하고, 동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외국의 이공계대학을 졸업한 자로서 환경감시원으로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자

제20조제1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탄화수소

제2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2조 (자동차제작에 있어서의 배출가스 농도기준) ①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배출가스의 농도기준은 자동차의 종별로 다음의 항목에 대하여 정한다.

1. 일산화탄소
2. 매연
3. 탄화수소
4. 질소산화물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배출가스의 농도기준은 보건

사회부장관이 상공부장관과 협의하여 보건사회부령으로 정한다.

제23조의 2 및 제23조의 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3조의 2 (생활소음의 제한) ①법 제32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생활소음규제 기준의 적용지역은 다음과 같다.

1. 도시계획법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주거전용지역 · 주거지역 및 준주거지역

2. 기타 보건사회부령이 정하는 지역

②법 제32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생활소음 규제기준을 정하는 대상은 다음과 같다.

1. 확성기에 의한 소음(옥내설치 확성기의 소음이 옥외에 발산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2. 공장 및 사업장의 작업소음

3. 제 1호 및 제 2호의 십야의 계속적 또는 반복적인 소음

제27조제 1항중 “별표 2”를 “별표 4”로 한다.

제31조의 제목중 “사업자의”를 “원인자의”로 하며, 동조본문중 “사업자의”를 “원인자의”로, “사업자로”를 “자로”로 한다.

제32조 제목 · 제 1항본문 및 제 2항중 “사업자”를 각각 “원인자”로 한다.

제33조제 1항제 2호중 “비용부담사업자”를 “비용부담원인자”로 하고, 동항제 5호중 “사업자별”을 “원인자별”로, 동항제 6호중 “사업자”를 “원인자”로 한다.

제34조 제목과 제 1항중 “사업자”를 각각 “원인자”로 하고, 동조제 2항중 “사업자”를 각각 “원인자”로 하고, “사업장을 설치하여”를 “사업장을 설치하는 등으로”로 한다.

제35조를 삭제한다.

제37조 각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주민등록등본(주민등록증의 확인으로 갈음할 수 있다) 및 신원증명서(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등본과 대표자의 신원증명서)

2. 시설 및 장비명세서

3. 기술능력보유현황 및 그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4. 자본 또는 재산을 증명하는 서류

제38조의 2를 삭제한다.

제39조 제목중 “폐기물처리업”을 “산업폐기물처리업”으로 하고, 동조본문중 “산업폐기물(이하 “폐기물”이라 한다)”를 “산업폐기물”로 한다.

제4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0조 (산업폐기물처리업의 허가신청) ①법 제5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자는 보건사회부령이 정하는 업종별 시설 · 장비 · 기술능력 · 자본 또는 재산의 확보계획서와 사업운영에 관한 계획서를 제출하여 환경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제 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획의 승인을 얻은자는 업종별 시설 · 장비 · 기술능력 · 자본 또는 재산을 갖추어 계획의 승인을 얻은 날로부터 6월이내에 산업폐기물처리업 허가신청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환경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그 기간내에 산업폐기물처리업의 허가신청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획승인은 그 기간이 만료된 날의 다음 날로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1. 주민등록등본(주민등록증의 확인으로 갈음할 수 있다) 및 신원증명서(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등본과 대표자의 신원증명서)

2. 시설 및 장비명세서

3. 기술능력보유현황 및 그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4. 자본 또는 재산을 증명하는 서류

③환경청장은 제 2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허가하여야 한다.

제41조중 “폐기물처리업”을 “산업폐기물처리업”으로 한다.

제41조의 2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1조의 2 (산업폐기물처리계획 및 실적보고) ①사업장을 경영하는자는 법 제49조의 3 제 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폐기물을 스스로 또는 산업폐기물 처리업자에게 위탁하여 처리하는 경우에 다음연도의 처리계획은 매년 11월 말일까지, 매년의 집행실적은 다음연도 2월 말일까지, 그 사업장을 관할하는 시장 ·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산업폐기물처리업자는 매년의 산업폐기물처리 실적을 다음년도 2월 말일까지 환경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시장 · 도지사는 제 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처리계획 및 집행실적을 보고받은 때에는 이를 지체없이 환경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48조제 1항중 “시 · 도의 부시장(서울특별시에 있어서는 제 1부시장) 또는 부지사”를 “시 · 도의 부시장 또는 부지사”로 한다.

제48조의 2 제 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천연기념물의 지정

제48조의 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8조의 4 (환경오염방지기금) 법 제62조의 2 제 2항제 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입금”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수입금을 말한다.

1. 차입금

2. 응자금에 따르는 이자수입금

제4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9조 (권한의 위임) 법 제6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의 환경 청장의 권한을 시장 · 도지사에게 위임한다.

1. 법 제 8조의 규정에 의한 특별대책지역안의 토지이용과 시설설치의 제한

2. 법 제 15조제 1항의 규정에 의한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및 변경허가

3. 법 제16조제 1항의 규정에 의한 배출시설과 방지시설의 설치신고수리 및 겸사

4. 법 제 16조의 2 제 2항의 규정에 의한 배출시설 및 방지 시설의 운영에 관한 명령

5. 법 제 17조의 규정에 의한 배출시설 또는 방지시설의 개선등의 명령

6. 법 제 18조의 규정에 의한 배출시설의 조업정지 등의 명령

7. 법 제 19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장의 이전 명령

8. 법 제 19조의 2의 규정에 의한 배출부과금의 납부명령

9. 법 제 20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의 취소

10. 법 제 21조의 규정에 의한 위법시설에 대한 폐쇄 등의 명령

11. 법 제 23조의 규정에 의한 배출시설 관리인의 임명신고수리

12. 법 제 23조의 2의 규정에 의한 배출시설 관리인의 변경명령

13. 법 제 32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생활소음 규제기준에 따른 소음의 제한

14. 법 제 37조제 2항의 규정에 의한 오염물질의 제거명령

[별표 1] 및 [별표 2]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3] 및 [별표 4]를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이 영은 공포후 30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별표 1]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의 범위 및 협의요청시기

사 업	범 위	협 의 요 청 시 기
도시의개발	<p>1. 새로운 도시의 건설(산업기지개발촉진법, 주택건설촉진법 및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한 새로운 도시의 건설은 포함되지 아니한다)</p> <p>2. 도시계획법 제 2조제 1항제 1호 다목 및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 2조제 1항제 1호의 토지구획정리사업 중 면적 30만제곱미터 이상인 것</p> <p>3.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제 1항의 규정에 의하여 30만제곱미터 이상의 대지를 조성하는 사업</p> <p>4. 택지개발촉진법 제 2조제 1호의 택지를 30만제곱미터 이상 개발하는 사업</p> <p>5. 도시계획법 제 2조제 1항제 1호 다목의 일단의 공업용지조성사업 중 면적 15만제곱미터 이상인 것</p> <p>6. 오물청소법 제 2조제 3호의 분뇨종말처리 시설 중 그 처리능력이 100킬로미터 / 일 이상인 시설과 동법 제 2조제 4호의 쓰레기종말처리 시설 중 그 처리능력이 500톤 / 일 이상인 시설</p> <p>7. 인구 50만 이상인 시의 도시계획구역내에서 실시하는 하천법 제 2조제 1항제 4호의 하천공사 중 그 공사구간이 하천중심길이 10킬로미터 이상인 것</p> <p>8. 인구 50만 이상인 시에서 실시하는 도시계획법 제 2조제 1항제 4호의 도시계획사업 중 그 결정을 위하여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는 다음의 사업 가. 길이 4킬로미터 이상의 도로(서울특별시·직할시의 경우는 폭30미터 이상의 도로, 기타의 시의 경우에는 폭25미터 이상의 도로에 한 한다)</p> <p>나. 운하</p> <p>다. 운동장(종합운동장 및 골프장에 한한다)</p> <p>라. 하수도(종말처리장에 한한다)</p> <p>마. 유통업무설비(화물자동차 정류장을 포함하는 유통업무설비에 한한다)</p> <p>9. 1호 내지 8호에 해당하는 사업 중 특정지역 종합개발촉진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시행되는 사업</p>	<p>○ 도시계획법 제 11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의 입안을 완료하기 전</p> <p>○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 32조 제 1항 또는 동법 제 35조제 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계획을 정하기 전</p> <p>○ 주택건설촉진법 제 33조제 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지조성사업계획의 작성을 완료하기 전</p> <p>○ 택지개발촉진법 제 8조제 1항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계획의 작성을 완료하기 전</p> <p>○ 도시계획법 제 25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 사업의 실시계획을 작성 완료하기 전</p> <p>○ 오물청소법 제 14조제 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설의 설치허가 또는 승인을 신청하기 전</p> <p>○ 하천법 제 16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청이 시행하는 경우는 공사시행의 기본계획을 수립완료하기 전, 기타의 경우는 동법 제 30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계획의 인가를 신청하기 전</p> <p>○ 도시계획법 제 25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 사업의 실시계획을 작성 완료하기 전</p> <p>○ 특정지역종합개발촉진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 15조 제 1항의 개발사업의 실시계획을 수립완료하기 전</p>
산업일자리 및 공업단지	<p>1. 산업기지개발촉진법 제 2조제 2항의 산업기지 개발사업 중 면적 15만제곱미터 이상인 것</p> <p>2. 수출자유지역설치법 제 4조의 규정에 의하여 15만제곱미터 이상의 자유지역을 조성하는 사업</p> <p>3. 중소기업진흥법 제 15조제 1항의 단지조성사업 중 면적 15만제곱미터 이상인 것</p> <p>4. 공업배치법 제 20조의 규정에 의하여 15만제곱미터 이상의 공업단지를 조성하는 사업</p> <p>5. 지방공업개발법 제 2조제 1항의 공업개발장려지구를 조성하는 사업 중 면적 15만제곱미터 이상인 것</p> <p>6. 1호 내지 5호에 해당하는 사업 중 특정지역 종합개발촉진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시행되는 사업</p>	<p>○ 산업기지개발촉진법 제 8조제 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기지개발사업의 실시계획의 작성을 시작하기 전</p> <p>○ 수출자유지역설치법 제 3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유지역을 지정하기 전</p> <p>○ 중소기업진흥법 제 15조제 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계획의 승인을 얻기 전</p> <p>○ 공업배치법 제 20조제 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업단지예정지의 지정을 받기 전</p> <p>○ 지방공업개발법 제 4조제 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발지구 조성기본계획의 승인을 신청하기 전</p> <p>○ 특정지역종합개발촉진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 15조제 1항의 개발사업의 실시계획을 수립완료하기 전</p>
에너지개발	<p>1. 해저광물자원개발법 제 2조제 1호의 해저광업 중 에너지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것</p> <p>2. 광업법의 규정에 의하여 에너지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광산의 개발</p> <p>3. 전원개발에 관한 특례법 제 2조제 2호의 전원개발사업 중 동법 제 5조제 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 계획을 작성하여야 하는 사업</p> <p>4. 원자력법 제 11조의 규정에 의한 발전용 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건설</p>	<p>○ 해저광물자원개발법 제 14조제 1항의 규정에 의하여 채취권의 설정을 출원하기 전</p> <p>○ 광업법 제 47조제 1항의 규정에 의하여 채광계획서의 인가를 신청하기 전</p> <p>○ 전원개발에 관한 특례법 제 5조제 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계획의 승인을 신청하기 전</p> <p>○ 원자력법 제 11조제 3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지에 대한 사전승인을 신청하기 전</p>

	<p>5. 1호 내지 4호에 해당하는 사업중 특정지역 종합개발촉진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시행되는 사업</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정지역 종합개발촉진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5조제1항의 개발사업의 실시계획을 수립완료하기 전
항만건설	<p>1. 어항법 제5조의 제1종 및 제2종 어항의 어항시설중 기본시설 및 철도시설의 건설</p> <p>2. 항만법 제2조 제1항의 지정항만의 항만시설중 외곽시설, 철도, 운하 및 보관시설의 건설과 항만시설용지의 개발</p> <p>3. 1호 내지 2호에 해당하는 사업중 특정지역 종합개발촉진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시행되는 사업</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어항법 제8조의 시설계획을 작성완료하기 전 ○ 항만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청이 시행하는 경우는 공사시행의 기본계획을 수립완료하기 전, 기타의 경우는 동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 또는 승인을 요청하거나 동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신청하기 전 ○ 특정지역 종합개발촉진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5조 제1항의 개발사업의 실시계획을 수립완료하기 전
도로건설	<p>1. 도로법 제11조의 고속국도, 일반국도 및 지방도의 4킬로미터 이상 신설</p> <p>2. 1호에 해당하는 사업으로서 특정지역 종합개발촉진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시행되는 사업</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속국도법 제3조 또는 도로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노선을 지정하기 전이나 도로법 제15조 또는 동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노선을 인정하기 전 ○ 특정지역 종합개발촉진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5조 제1항의 개발사업의 실시계획을 수립완료하기 전
수자원개발	<p>1. 하천법 제38조 제1항의 땜 및 하구언의 건설</p> <p>2. 1호에 해당하는 사업으로서 특정지역 종합개발촉진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시행되는 사업</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하천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청이 또는 동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부장관이 시행하는 경우는 공사시행의 기본계획을 수립완료하기 전, 특정다목적댐법 제2조제1항의 다목적댐을 건설하는 경우는 동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본계획을 수립완료하기 전, 기타의 경우는 하천법 제30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계획의 인가를 신청하기 전 ○ 특정지역 종합개발촉진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5조 제1항의 개발사업의 실시계획을 수립완료하기 전
철도(지하철도를 포함한다)	<p>1. 철도법 제2조제1항의 철도의 건설</p> <p>2. 지하철도건설촉진법 제3조 제1항의 지하철도의 건설</p> <p>3. 1호 내지 2호에 해당하는 사업중 특정지역 종합개발촉진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시행되는 사업</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시계획구역안에서 건설하는 경우는 도시계획법 제25조의 실시계획을 수립완료하기 전, 그밖의 지역에서 건설하는 경우는 공사시행의 기본계획을 수립완료하기 전 ○ 지하철도건설촉진법 제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노선을 지정하기 전 ○ 특정지역 종합개발촉진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5조 제1항의 개발사업의 실시계획을 수립완료하기 전
공항(군용비행장은 제외한다)	<p>1. 항공법 제2조 제4항의 비행장의 설치 및 확장</p> <p>2. 1호에 해당하는 사업으로서 특정지역 종합개발촉진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시행되는 사업</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통부장관이 확장하는 경우와 항공법 제3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하는 경우는 공사시행의 기본계획을 수립완료하기 전, 기타의 경우는 동법 제33조 제2항 또는 동법 제3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 또는 변경허가를 신청하기 전 ○ 특정지역 종합개발촉진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5조 제1항의 개발사업의 실시계획을 수립완료하기 전
간척 및 항만준설	<p>1. 하천법 제2조 제1항 제1호의 하천구역안에서의 공유수면매립중 그 면적이 300헥트알 이상인 것과 공유수면관리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지정항만 구역안에서의 공유수면 매립</p> <p>2. 농지확대개발촉진법 제2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개간사업으로 실시하는 1,000헥트알 이상의 간척사업</p> <p>3. 항만법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종 지정 항만에서의 항만준설사업중 개발준설</p> <p>4. 1호 내지 3호에 해당하는 사업중 특정지역 종합개발촉진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시행되는 사업</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유수면매립법 제10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기 전, 동법 제25조 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계획의 인가를 신청하거나 또는 동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를 요청 또는 승인을 신청하기 전 ○ 농지확대개발촉진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본계획을 작성완료하기 전 ○ 항만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청이 시행하는 경우는 공사시행의 기본계획을 수립완료하기 전, 기타의 경우는 동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 또는 승인을 요청하거나 동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신청하기 전 ○ 특정지역 종합개발촉진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5조 제1항의 개발사업의 실시계획을 수립완료하기 전
아파트지구의개발	<p>1. 주택건설촉진법 제20조 및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아파트지구의 개발사업중 면적 25만제곱미터 이상의 것</p> <p>2. 1호에 해당하는 사업으로서 특정지역 종합개발촉진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시행되는 사업</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택건설촉진법 제2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아파트지구 개발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완료하기 전 ○ 특정지역종합개발촉진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5조제1항의 개발사업의 실시계획을 수립완료하기 전

관광단지 의 개발	1. 관광사업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관광지조성사업	○관광사업법 제4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광지 조성계획을 작성완료하기 전
	2. 관광단지개발촉진법 제2조의 관광단지를 개발하는 사업	○관광단지개발촉진법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광단지개발계획을 수립완료하기 전
	3. 1호 내지 2호에 해당하는 사업중 특정지역종합개발촉진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시행되는 사업	○특정지역종합개발촉진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5조 제1항의 개발사업의 실시계획을 수립완료하기 전

부과금의 산정기준

(별표 2)

구분	오염물질부과금액	배출률(미터당부과금액)	배출허용기준초과율별부과계수										지역별부과계수				악취농도별부과계수		
			20%미만	20%이상40%미만	40%80%미만	80%100%미만	100%200%미만	200%300%미만	300%400%미만	400%미만	I지역	II지역	III지역	청정및가지역	나지역	다 및 특례지역	3이상4미만	4이상5미만	5이상
오염물질																			
아황산	연소시설	500		1	1.3	1.6	1.9	2.5	3.5		4.5	조업정지	2	1	1.5				
가스	산업공정	165																	
불소화합물		800		1	1.3	1.6	1.9	2.5	3.5		4.5	조업정지	2	1	1.5				
분진		500		1	1.3	1.6	1.9	2.5	3.5		4.5	조업정지	2	1	1.5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 또는 화학적 산소요구량		250		1	1.6	1.7	1.8	1.9	2.0		4.5	조업정지				2	1.5	1	
부유물질		250		1	1.6	1.7	1.8	1.9	2.0		4.5	조업정지				2	1.5	1	
특정유해물질	카드뮴 및 그화합물	500,000		1	1.6	1.7	1.8	1.9	2.0							2	1.5	1	
	시안화합물	150,000		1	1.6	1.7	1.8	1.9	2.0							2	1.5	1	
	유기인화합물	150,000		1	1.6	1.7	1.8	1.9	2.0							2	1.5	1	
	연 및 그화합물	150,000		1	1.6	1.7	1.8	1.9	2.0							2	1.5	1	
	6가크롬화합물	300,000		1	1.6	1.7	1.8	1.9	2.0							2	1.5	1	
	비소 및 그화합물	100,000		1	1.6	1.7	1.8	1.9	2.0							2	1.5	1	
	수은 및 그화합물	1,250,000		1	1.6	1.7	1.8	1.9	2.0							2	1.5	1	
	포리크로리네이티드비닐	1,250,000		1	1.6	1.7	1.8	1.9	2.0							2	1.5	1	
동 및 그화합물		50,000		1	1.6	1.7	1.8	1.9	2.0							2	1.5	1	
크롬 및 그화합물		75,000		1	1.6	1.7	1.8	1.9	2.0							2	1.5	1	
악취		500														2	1	1.5	
																1	1.25	1.5	

- (주) 1. 배출허용기준초과율=(배출농도-배출허용기준농도)÷배출허용기준농도×100
2. I 지역: 국토이용관리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취락지역, 도시계획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주거지역, 상업지역
3. II 지역: 국토이용관리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공업지역, 수산자원보전지역, 개발촉진지역, 유보지역, 도시계획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공업지역
4. III 지역: 국토이용관리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경지지역, 산림보전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관광휴양지역, 도시계획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농지지역
5. 청정지역 및 가지역, 나지역, 다지역 및 특례지역의 구분은 보건사회부령으로 정한다.
6. 악취농도는 환경오염공정시험법의 판농법으로 측정한다.

(별표 3)

가. 배출허용기준초과 일일오염물질배출량 산정방법

오염물질등	산정방법
아황산가스	일일유량×배출허용기준과농도 $\times 10^{-6} \times \frac{64}{22.4}$
불소화합물	일일유량×배출허용기준과농도 $\times 10^{-6} \times \frac{\text{화합물의 분자량}}{22.4}$
분진 및 수질분	일일유량×배출허용기준과농도
야오염물질등	$\times 10^{-6}$

- (주) 1. 배출허용기준과농도=배출농도-배출허용기준농도
2. 특정유해물질의 배출허용기준과 일일오염물질배출량은

소수점이하 세째자리까지 계산하고, 기타 오염물질에 대해서는 소수점이하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3. 아황산가스와 불소화합물의 배출농도단위는 피피엠(ppm)이고, 분진의 배출농도는 세제곱미터당 밀리그램(mg/m^3)이며, 수질분야 오염물질의 배출농도단위는 리터당 밀리그램(mg/ℓ)이다.

나. 일일유량 산정방법

대상물질	산정방법
폐수 및 배출가스	측량유량×일일조업시간

- (주) 1. 폐수의 측량유량의 단위는 분당 리터(ℓ/min)이고, 배출가스의 경우에는 시간당 세제곱미터(m^3/h)이다.
2. 일일조업시간은 측정하기 전 최근 조업한 30일간의 조업시간의 평균치로서 평균치로 표시하는 경우에는 분으로 표시하고, 배출가스의 경우에는 시간으로 표시한다.

[별표 4]

농수산물재배를 제한할 수 있는 오염기준

구분	유해물질종류	오염기준
토양	1. 카드뮴 및 그 화합물	생산된 현미 중의 카드뮴 함량이 1mg / kg 이상
	2. 동 및 그화합물	토양(밭에 한한다) 중의 동함량이 125mg / kg 이상
	3. 비소 및 그화합물	토양(밭에 한한다) 중의 비소함량이 15mg / kg 이상
수역	1. 수은	0.005mg / ℓ 이상
	2. 동	0.01mg / ℓ 이상
	3. 연	0.1mg / ℓ 이상
	4. 6 가크롬	0.05mg / ℓ 이상
	5. 시안화합물	0.1mg / ℓ 이상

◇ 環境保全法施行令 改正理由

환경보全법이改正(1981. 12. 31, 法律 第3,505號)됨에 따라 그施行에 필요한事項을 정하려는 것임.

◇ 主要骨子

가. 環境影響評價書를 作成하여야 할 事業의 具體的 범위와 그에 관하여 環境廳長에게 協議를 要請하는 時期를 明確하게 정함(令 第4條의 2 第2項 및 令 別表 1).

나. 自然環境의 保全을 위한 調査의 種類 및 方法과 自然生態界保全區域의 指定對象을 정함(令 第6條第1項 및 第4項).

다. 排出施設 및 防止施設의 設置許可時에는 環境技術監理團의 技術檢討를 받도록 함(令 第16條의 2).

라. 環境技術監理團의 構成·業務 및 運營에 관하여 정함(令 第17條의 2 및 第17條의 3)

마. 排出施設의 改善 또는 移轉命令를 받은 事業者는 부득이한 事情이 없는 한 15日이내에 改善 또는 移轉등에 관한 事項을 明確히 한 計劃書를 環境廳長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이를 履行하지 아니하면 그 命令에 明示된 汚染狀態에서 汚染物質을 排出하면서 계속排出施設을 積動한 것으로 推定함(令 第17條의 6).

바. 排出賦課金의 賦課對象污染物質, 그 算定方法 및 基準, 賦課節次와 納入된 賦課金의 精算에 관하여 정함(令 第17條의 7 내지 第17條의 13).

사. 自動車 및 重機의 排出ガス許容基準 設定項目에 炭化水素量 を 추가함(令 第20條 第1項 第3號).

아. 生活騒音規制基準의 適用地域 및 對象을 정함(令 第23條의 2).

자. 產業廢棄物處理業의 許可節次에 事業計劃의 事前承認節次를 新設하여 施設등을 完了한 후에 不許可되는데 따른 피해를 줄임(令 第40條).

차. 產業廢棄物處理業者 및 事業場經營者는 그 處理計劃 및 處理實績을 報告하도록 함(令 第42條의 2).

〈법제처 제공〉

대형공사계약에 관한 예산회계법시행령특례규정중개정령(1983. 4. 20 개정)

대통령령제 11,104호

대형공사계약에 관한 예산회계법시행령특례규정중개정령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 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 1조 (목 적) 이 영은 대형공사의 계약중 대안입찰 또는 설계·시공일괄입찰에 의한 계약과 특정공사의 계약에 관하여 예산회계법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에 대한 특례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조제 4호중 "모든 서류"를 "도면 및 서류(이하 "도서"라 한다)"로 하고, 동조제 5호를 동조제 7호로 하며, 동조에 제 5호 및 제 6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기본설계입찰"이라 함은 설계·시공일괄입찰의 기본계획 및 지침에 따라 실시설계에 앞서 기본설계와 그에 따른 필요한 도서를 작성하여 입찰서와 함께 제출하는 입찰을 말한다.

6. "실시설계입찰"이라 함은 기본설계입찰에 의하여 실시설계입찰적격자로 선정된 자가 설계·시공일괄입찰의 기본계획 및 지침과 기본설계에 따라 세부적으로 시공에 필요한 설계와 그에 따른 도서를 작성하여 입찰서와 함께 제출하는 입찰을 말한다.

제 3조제 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각 중앙관서의 장은 당해 연도 이후에 집행할 대형공사 및 특정공사의 집행 기본계획서를 재무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재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재무부장관은 제출된 대형공사 집행 기본계획서중 대안입찰 또는 설계·시공일괄입찰(이하 "일괄입찰"이라 한다)의 방법에 의하여 집행할 공사와 특정공사를 매회계연도 초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 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 7조 (입찰) ①대안입찰자 또는 일괄입찰자는 계속비공사에 있어서는 총공사에 대하여 입찰하여야 하며, 일반공사에 있어서는 제 1차공사에 입찰하되, 총공사 입찰금액을 부기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안입찰의 원안입찰에 관하여는 시행령 제99조의 2 제 5 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일괄입찰은 기본설계입찰과 실시설계입찰로 분리하여 실시하고 기본설계입찰자중 제 9조제 1 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설계입찰적격자로 선정된 자가 아니면 실시설계입찰에 참가할 수 없다. 다만,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은 긴급히 시공하여야 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기본설계입찰을 생략할 수 있다.

③대안입찰자가 원안입찰과 함께 대안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도서를 입찰서에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동시에 2개 이상의 대안을 제출할 수 없다.

1. 대안설계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서

2. 설계심사위원회 규정에서 정하는 설계도

3. 단가 및 수량을 명백히 한 산출내역서

4. 대안의 채택에 따른 이점 기타 참고사항을 기재한 서류

④일괄입찰자는 기본설계입찰서 또는 실시설계입찰서에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른 도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기본설계입찰

(가) 기본설계에 대한 설명서

(나) 설계심사위원회 규정에서 정하는 설계도서

(다) 일괄입찰에 따른 이점 기타 공고로 요구한 사항

2. 실시설계입찰

(가) 실시설계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서

(나) 설계심사위원회 규정에서 정하는 설계도서

(나) 단가 및 수량을 명백히 한 산출내역서

(라) 일괄입찰에 따른 이점 기타 참고사항을 기재한 서류
⑤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은 제4 항의 규정에 의한 기본설계입찰서 또는 실시설계입찰서를 제출받은 경우 중앙설계심사위원회에 설계의 적격여부에 대한 심의를 의뢰하여야 하며, 중앙설계심사위원회는 기술적 타당성을 검토하고 설계의 적격여부를 명백히 하여 설계점수를 당해 중앙관서의 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⑥실시설계입찰시의 입찰금액은 기본설계입찰서에 기재한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⑦중앙설계심사위원회는 제5 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설계심의를 함에 있어서 실시설계입찰서에 첨부된 도서중에서 기본계획 및 지침과 기본설계의 내용에 비추어 제출된 도서가 미비하거나 그 내용이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에 대한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제8조제2항 본문중 “제7조제2항의”를 “제7조제3항의”로 한다.

제8조제5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1항의 낙찰적격입찰의 입찰금액 또는 제4 항의 낙찰적격입찰중 대안이 채택되지 아니한 원안 부분의 입찰금액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75미만으로서 다른 입찰자와 비교하여 현저하게 저가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할 경우에 대해 공사의 적정한 이행이 되지 아니할 우려가 있거나 공정한 거래의 질서를 문란하게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계약심의위원회 심의에 회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당해 입찰자가 부적격판정을 받은 때에는 그 입찰자를 낙찰자로 하지 아니하며, 차순위 이후 최저가격입찰자에 대한 낙찰여부 결정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9조제1항·제2호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①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은 기본설계입찰에 있어서 제7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은 때에는 총공사입찰금액(일반공사인 경우에는 부기한 총공사입찰금액)을 설계점수로 나누어 그 수치가 가장 낮은 것부터 5인이하의 입찰자를 실시설계입찰적격자로 선정한다.

②실시설계입찰에 참가한 자중 낙찰자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계약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방식에 따라 산출하여 그 수치가 가장 낮은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다만, 같은 수치의 입찰자가 2인이상일 때에는 입

찰금액이 가장 낮은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낙찰자의 결정은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 한 실시설계입찰일로부터 60일이내에 하여야 한다.

제13조를 삭제한다.

제15조제2항제1호중 “제7조제2항 및 제3항”을 “제7조제3항 및 제4항”으로 하고, 동항제2호중 “계약체결”을 “설계변경”으로 한다.

부 칙

①(시행일)이 영은 공포후 10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제5항 단서의 개정 규정은 198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영 시행전에 체결한 계약 및 이 영 시행전에 낙찰되었거나 입찰공고가 된 계약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 大型工事契約에 관한 豫算會計法施行令特例規程 改正理由

大型工事契約 및 特定工事契約 중 代案入札에 있어서 價格審査制를 導入하여 不實工事 및 優良을 防止하고, 大型工事契約 중 設計·施工一括入札에 있어서 基本設計入札과 實施設計入札를 分離하여 實施함으로써 入札者の 設計費負擔을 輕減시키는 한편 設計點數制를 導入하여 優秀設計者가 많이 落札되도록 誘導하려는 것임.

◇ 主要骨子

가. 代案入札의 落札者選定

原案部分에 대한 入札金額이 豫定價格의 100분의 75미만인 者가 落札適格入札者인 경우에는 契約審議委員會에서 適正價格 여부를 審議하도록 함(令 第8條第5項).

나. 設計·施工一括入札의 落札者選定

(1) 設計·施工一括入札은 基本設計入札과 實施設計入札로 分離하여 實施하고 基本設計入札者 중 5人이하의 實施設計入札適格者를 選定하여 이들에 한하여 實施設計入札에 參加할 수 있도록 하여 入札者の 設計費負擔을 淡여 줌(令 第7條第2項 및 令 第9條第1項).

(2) 設計·施工一括入札의 落札者決定에 있어 종전에는 最低價格入札者를 落札者로 하던 것을 앞으로는 入札金額을 設計點數로 나누어 그 數值가 最低인 者를 落札者로決定하도록 함으로써 優秀設計者가 落札될 수 있도록 誘導함(令 第9條第2項).

〈법제처 제공〉

국민주택기금운용및관리규정개정(1983. 4. 27개정)

건설부훈령제598호

제4조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국민주택채권, 국민주택기금채권, 주택복권 및 올림픽복권 발행으로 조성된 자금

제23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제3항 및 제4항은 각각 제4항 및 제5항으로 한다.

③지방자치단체 및 대한주택공사, 한국주택은행은 사업 계획승인을 받아 시행중인 사업중 년도말 현재 준공되지 못하고 이월이 예상되는 사업에 대하여는 사업별 자금내역을 파악해 익년 1월말까지 건설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31조 본문을 제1항으로 하며, 제1항 단서규정을 다음과 같이 하고,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국가, 지방자치단체, 대한주택공사, 농업협동조합 및 법 제10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국민주택기금에 자금을 예탁

한 공공기관에 대하여는 담보취득을 생략할 수 있다.

②건물이 준공되었을 때에는 화재보험에 가입토록 하고 보험청구권에 질권을 설정하여야 하며, 법령에 의한 화재보험 가입의무가 있는 지역을 제외하고는 화재보험 가입금액을 매년 대출금 잔액의 100%이상으로 한다.

③임대주택 및 조합주택을 건설할 대지가 지방자치단체, 정부 투자기관에서 분양한 체비지인 경우에는 당해 대지 소유권이 사업주체에 이전될 때 제1순위의 근저당권을 설정할 수 있도록 동 분양기관과 약정을 체결토록하여 용자하거나, 타 담보취득후 용자할 수 있다.

제32조 본문을 제1항으로 하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제1항 단서규정에 의거 응자금을 미리 지원할 경우에는 사

업계회승인을 끝한 사업으로서 공정율이 20%미만인 사업은
융자금의 50%범위내에서 공정율이 20%이상은 융자금의 90
%범위내에서 미리 지원할 수 있다.

제35조 제 2 항 말미에 다음 규정을 추가하여, 제 3 항 단서규정
을 다음과 같이 한다.

이 경우 근저당 설정을 위한 담보설정 최고액은 대출금 잔액
의 150%이내로 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10조의 2의 규정
에 의하여 국민주택기금에 자금을 예탁한 공공기관의 명의로
소유권 보존등기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은행의 담보취득을
생략할 수 있으며, 대지를 입주자 명의로 이전 등기할 수 없
는 사유가 있거나 기타 부득이 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사업
주체가 상환의무를 진다.

별표 1. 항목 6호중(중앙재해대책본부 82. 3. 4)를 (중앙재
해대책본부)로 한다.

별표 2. 항목 2호 및 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항 목 이 율 상 환 방 법

2. 임대주택에 대한 자금지원

1) 지방자치단체, 연 5%	1년거치 19년 체증식 할부상환 (월 단위 등차식)
대한주택공사민 간임대주택	(다만, 임대기간이 종료되어 분 양주택으로 전환될 경우에는 분 양주택에 지원되는 자금의 이율 을 적용한다)
2) 사원용임대주택 연10%	1년거치 19년 체증식 할부상환 (월 단위 등차식)
3) 지방자치단체, 연 5%	1년거치 19년 체증식 할부상환 (월 단위 등차식)
대한주택공사가 전설공급하는 국 민주택을 연간20	

세대이상
최저 5년이상장
기임대목적으로
분양받는 자에
게지 원하는자금

3. 광주권 제 2 차 연10% 3년거치 17년 체증식 할부상환
IBRD 차관사업에 (월 단위 등차식)
대한지원자금

부 칙

제 1 조 (시행일) 이 규정은 1983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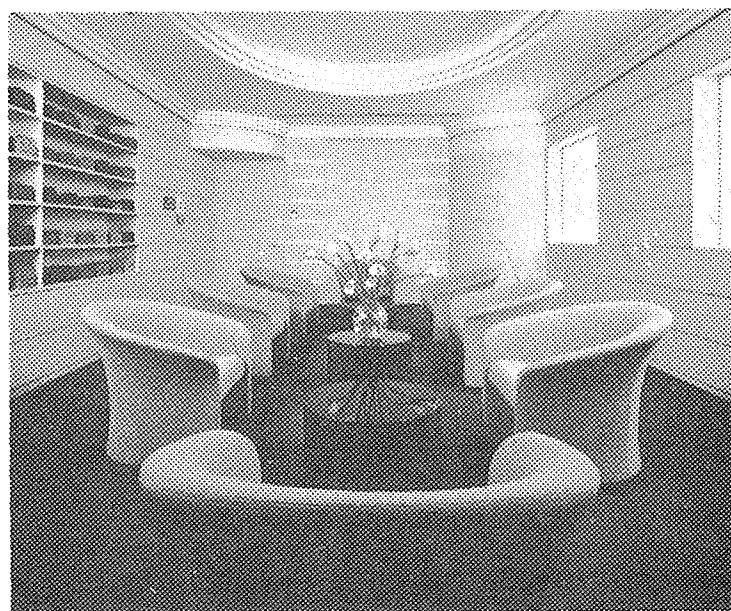
제 2 조 (광주권 제 2 차 IBRD 차관사업에 대한 경과조치) 별표 2
항 항목 제 3 항 광주권 2 차 IBRD 차관사업에 이미 대출된
국민투자금은 본 규정 시행과 동시에 변경된 상환방법을 적용
한다.

제 3 조 (인천 및 대구직할시에 대한 경과조치) 제 27조제 4 항의 규
정 중 인천 및 대구직할시에 대하여는 198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 4 조 (화재보험 가입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일 이전
의 화재보험 가입은 제 31조제 2 항에 의한 보험에 가입된 것
으로 본다.

제 5 조 (분양주택의 장기 임대주택 전환에 따른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일 이전에 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한주택공사로부터
연간 20세대 이상의 국민주택을 분양받아 장기 임대된 주택
에 대하여는 변경된 이율을 적용한다.

제 6 조 (민간인 임대주택에 지원된 자금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일 이전에 민간인 임대주택에 지원된 자금은 본 규
정 시행일로부터 최초 약정납입일까지는 종전의 이율을 적용
한다.



John Enright